#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4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이만희·구자근·권성동

권영진 · 김선교 · 강선영

조은희 • 이상휘 • 박형수

이양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유임 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			
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을 위한 연구 개발, 국유임		
	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조직		
	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		
	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		
	물을 공급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